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0 발의연월일: 2020. 1. 12.

발 의 자: 장경태·강득구·권인숙

김남국 • 민형배 • 신동근

오영환 · 유정주 · 이규민

이수진 · 장철민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 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이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

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제28조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당 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
	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
	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
	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
	<u>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u>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u>다.</u>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
	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 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 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 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 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 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 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 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없는 경우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 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 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 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저 (생 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 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④ (생 략)

<u>/ - 1 </u>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100분의 1</u>
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
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u>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거이 호 H 기드로마가이 호 9이